

광주지방법원 2017. 1. 11 선고 2016가단18543 판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재판경과

광주지방법원 2017. 10. 18 선고 2017나410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1. 11 선고 2016가단18543 판결

전문

원고A

피고B

변론종결 2016. 12. 14.

판결 선고 2017. 1.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나주시 C대 598㎡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ㄴ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가) 부분 지상 건물 및 스테트지붕쇠기둥 21㎡를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남 나주시 C 대 598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전 공유자인 D(2/3지분, 광주지방법원 E 임의경매절차에서 2015. 6. 30. 낙찰, 2015. 6. 30. 등기), F(62/597 지분, 2015. 11. 30.매매, 2015. 11. 18. 등기), G(137/597 지분, 2016. 4. 21.매매, 2016. 5. 16. 등기)로부터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D 소유의 나주시 H 대 281m²와 그 지상 목조 아연지붕 단층주택 47.60m²(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광주지방법원 E 임의경매절차에서 2015. 6. 22. 낙찰받아 2015. 6.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주택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가) 부분이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 3, 5호증(가지 번호 포함), 감정인 I의 감정축타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로 인정되므로 그 지상 토지를 침범하여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주택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가) 부분 21m²를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시효취득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선내(가)부분 21m²을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법정지상권 성립 주장에 대한 판단 D가 이 사건 토지 중 2/3 지분과 나주시 H대 281m²와 그 지상

이 사건 주택을 소유했던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D 지분을 2015. 6. 30., 피고가 나주시 H대 281㎡와 그 지상 이 사건 주택을 2015. 6. 22. 각 광주지방법원 E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은 앞에서 본바와 같은 바, 그렇다면 이는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사건 주택)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는 주택소유자인 피고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민법 제366조), 원고는 지상권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ㄱ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가) 부분 21㎡의 철거를 구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박현

별지